

중대범죄수사청

제 호 . . .

수 신:

제 목: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통지

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귀 기관에서 인지통보한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여부의 회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대 사 상 건	접 수 번 호	
	죄 명	
	피 (혐) 의 자	000외 0명
	인 지 통 보 (서) 면 접 수 일	
연 기 장 한		
연 사 장 유		
비 고		

중대범죄수사청장